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6블록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입주자모집공고 (10년 공공건설임대)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은 2016.11.15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청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1.2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구미시)은「주택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15.12.29 시행되었으나 당해 주택은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3호에 의거「(구)임대주택법」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 제7호에 의거하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5)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세 명 이상)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5)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주택 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주택법」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청약제한 등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이며, 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2016.08.12 개정된 〈국토교통부령 제353호〉「주택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5항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3조 제15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이라 함.)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포함)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모두를 무효처리함.

과거 주택당첨사실 조회방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포함)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관련업무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과거당첨사실조회 ➡ 주택청약 로그인(공인인증 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신청자 본인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하여야 함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구)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구)임대주택법」제19조 및「(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함) 공급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 불가)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구)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함) 및 일반공급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만19세 미만인 자는 청약신청 불가(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청약신청 가능)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1.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1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규정에 의거 구미시 건축과 - 43162호(2016.11.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공동주택 26블록(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026-01-0001)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12~25층 18개동 총 2,0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209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0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9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41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2세대 포함]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10년 공공건설임대)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면적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기관추천(일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수	입주예정 시기
국민주택(임대)	2016001489-01	59.1994A	59.1994	24.3798	83.5792	33.6175	117.1967	45.2508	1,922	192	192	192	384	57	905	88	2019년 4월
	2016001489-02	59.5114B	59.5114	24.0377	83.5491	33.7945	117.3436	45.4893	170	17	17	17	34	5	80	7	

■ 임대조건

(단위 :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 구분	계약구분	임대보증금	계약금 1회 계약시	계약금 2회 2017.02.07	중도금 1회 2018.03.07	중도금 2회 2018.06.07	중도금 3회 2018.09.07	중도금 4회 2018.11.07	잔금 입주지정일	월임대료
59.1994A	1,922	전층	표준	42,500,000	4,250,000	4,250,000	4,250,000	4,250,000	4,250,000	4,250,000	17,000,000	566,000
			전환	85,0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34,000,000	523,000
59.5114B	170	전층	표준	43,200,000	4,320,000	4,320,000	4,320,000	4,320,000	4,320,000	4,320,000	17,280,000	570,000
			전환	86,400,000	8,640,000	8,640,000	8,640,000	8,640,000	8,640,000	8,640,000	34,560,000	527,000

※ 공통사항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조건은「(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임대보증금에서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판매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임대대상 및 임대보증금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주택형별로 세대당 ₩70,000,000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여 융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입주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임대기간 및 조건변경
• 임대기간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단,「(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 제2항 2호 및 3호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 시 분양전환 가능).
• 임대조건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1년차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구)임대주택법」제20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5% 범위 내에서 인상 할 수 있음.
• 표준 임대조건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8호「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제4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시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전환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함.

3 임대주택 분양전환 조건

구분	조건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임대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는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 -「(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이 가능함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구)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수선)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구미 확장단지 호반베르디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무관함.

(단위 : ㎡,원)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택지비	건축비	계
59.1994A	28,395,239	126,675,994	155,071,233
59.5114B	28,544,899	127,886,536	156,431,435

5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5)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일자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지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반환은 공급계약서에 따름.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서류 미비 시 계약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 세대)

구 분	대상세대 59.1994A	대상세대 59.511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192	17	20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92	17	209
신혼부부 특별공급	192	17	209
생애최초 특별공급	384	34	418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57	5	62
합계	1,017	90	1,107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이상 복무군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및 제45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련기관장(제45조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관련기관(예시)

구분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	국가유공자	비고
기관	구미시청, 경상북도청, 대구광역시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지청	

•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관련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관련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4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근무월수로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등으로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①~④)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함
※ 가구당 연간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연간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2항에 따른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동일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1.2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이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순위별 신청자격

주택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주택	구미시/경상북도/대구광역시	59.1994A 59.5114B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동일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 부터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단, 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산정)
- 1순차(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중 주택공급신청자가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무주택기간에 한정함.(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1순차가 되기 위하여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격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층별·향별·측벽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신청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상기의「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 주택에 대하여 1인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5항에 의거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그 당첨된 자의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임대주택 중복당첨에 한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의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를 받은 부적격당첨자는 소명기간 내(7일 이상)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함.

6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등/ 노부모	2016.11.30(수) 09:00 ~ 15: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구미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 경북 구미시 광평동 529-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16.12.01(목) 08:00 ~ 17:30	인터넷 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2016.12.02(금) 08:00 ~ 17:30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처리 않고 17:30분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모든 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APT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2순위 청약신청금

주택형	금액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청약시(09:00~16:00) : 청약자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후 익영업일(2016.12.09.) 이후부터 평일(09:00~16:0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환불 장소

구분	환불장소	비고
인터넷 신청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됩니다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7 신청시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O		관련기관의 추천서	본인	관련기관의 추천 명단으로만 접수함 /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자격증명서(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확인증명서')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상기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가 대리시에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비치,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신청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청약접수은행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국가유공자 등 / 노부모	• 일시 : 2016.11.30(수)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시(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일시 : 2016.12.08(목) • 확인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당사 견본주택	• 일시 2016. 12. 13(화) ~ 2016. 12. 15 (목) (3일간, 09:3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529-1번지)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6.12.08(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예비당첨자 포함)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해당 당첨자 발표일이 입주자 선정일자로 관리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결제원 (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6.12.08 ~ 2016.12.17 (10일간)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전화(ARS)		ARS 1369 (서비스코드 : 5#)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12.08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9 계약체결 등

■ 계약금 납부
• 계약금 수납확인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지정된 2차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403-092186	티에스자산개발(주)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 상실됨.
■ 서류발급 전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 대리시에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비고
공통		O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O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 주민등록초본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 대리계약시(본인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자		O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신혼부부	O		• 혼인관계증명서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O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O	• 출산이행 확인각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O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O		• 소득증빙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표1참조
	생애최초	O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1참조
일반공급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O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 필요시,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표1) 소득입증 증빙서류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①②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세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특별공급 및 1·2순위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① 기재내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1·2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③ 1·2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된 자(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④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해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 된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은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되고 이에 관련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예금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거나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함.
• 당 임대주택은「(구)임대주택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절차를 거쳐 전대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취소되고 고발 조치함.(단, 입주전 전대등의 및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10 기타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알선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및 한도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며 이에 관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이하여야 함.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자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9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구)임대주택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함.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추가 납부한 경우 전환보증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임대차 계약 할 수 있음.
■ 임대주택 매각기준
•「(구)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구)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 및「(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구)임대주택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인에 따른 분양전환하거나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는 경우
-「(구)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판매시설(별도 분양시설) 등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인감을 소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11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자 내용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소유권 이전등기는 분양전환 이후 가능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분양전환 이후)에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 하여야 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 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견본주택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및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의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동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사용검사도면 상의 내용을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 시설물 중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 시설물 중 입주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하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당해지구 내·외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에 따라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후속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아파트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따른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시공사인 (주)호반건설산업이 할 수 있으며, 그 각종 통지 등으로 인한 효과는 티에스자산개발(주)에게 모두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12 단지 여건사항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개발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발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민원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및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해당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및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높이는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세대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산업시설 배치에 따라 소음, 공해 등의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주차장용지 내 유수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사업부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관련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관할이므로 당사와 무관함.
• 당해 지구 내에는 지상 및 지하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력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및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북동측 완충녹지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사업부지 북측(폭 35.0~38.5m), 동측(폭 32.0m), 남측(폭 20~23.5m)도로를 접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서측에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에 접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완충녹지는 미확정으로 향후 조성 레벨에 의해 대지 경계부분의 조경석, 석축, 담장 등의 형태 및 레벨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북측에 산업시설용지, 충계펌프장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당첨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주택 공사 진행상황, 주변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에 따라 학교 신설여부와 시기 등이 변경·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지구 내 학교설립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향후 학생 수용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사업계획 변경, 주택 공사 진행상황, 주변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에 따라 학교 신설여부와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미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은 산동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산동중학교 등의 학생을 수용하는 지역이나, 현재 산동초 및 산동중의 시설은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교육지원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인근 초, 중학교 예정지에 학교가 신설되어 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나, 관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당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게 초·중학교 설립 추진이 불가하여, 신설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인근 초·중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 다소 과밀 학급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설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 계획은 입주시기 학생배치 여건 변화, 학교시설 설치공사 진행상황 및 각종 심의결과 반영 등에 따라 변경·지연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미교육지원청에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외관 등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되며 가구 및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임대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건축법」및「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또는 조경석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함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상의 형태는 평지붕으로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출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외벽마감은 1~3층 석재 마감 적용 예정이며 문주계획 등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등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되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도시가스 정압기는 단지 외 118동 인근 완충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나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판매시설의 출입은 단지내에서 가능하며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되므로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판매시설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판매시설, 부대시설의 입면, 창호 등의 계획은 추후 당사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관련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남측, 북측에 차량 진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판매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102,103,116,117동)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3동과 104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11동과 116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2동과 103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과 112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11동 측벽에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과 104동 사이 서측에 보행자 출입구 1개소 설치되어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에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주차장은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위치함
• 판매시설 주차장은 판매시설 전면 지상층에 위치하여 아파트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이며,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들이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
• 지하 커뮤니티시설 출입은 지상연결 계단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전면 유치원 및 유치원 운동장 설치
- 102동,103동 전면에 체험학습정원, 주민운동시설 설치
- 106동과 107동 전면에 경로당, 경로당정원 설치
- 107동과 108동 사이에 주민운동시설 설치
- 111,112동 전면에 선큰 및 커뮤니티광장 설치
- 105동과 112동 사이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 113과 114동 사이에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로당정원 설치
- 112동과 115동 사이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
- 117동 후면 경비실 설치, 116동과 117동 후면에 문주 설치
• 단지 서측, 남측, 북측에 계획된 완충녹지는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경계획, 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현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위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으로 일부세대 주방 후면 등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시설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판매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높이차에 의해 일부 조경석 및 산석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높이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및 위치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판매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13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임대보증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계단실에 승강기 1대가 설치됨(101,107,108,109,110동 3호 조합은 승강기 2대 설치).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6블럭 호반베르디움
2. 신 청 자 : 티에스자산개발㈜
3.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026-01-0001(26블럭)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해당없음
	비내력벽 재사용	해당없음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해당없음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라.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 이용	★★★★
	중수도 설치	해당없음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해당없음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마.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해당없음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해당없음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바.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법」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6년 09월 3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 개별난방 -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 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공용부위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세대 내 수전류 :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라인엔지니어링	(주)라인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822,448,200	936,231,608	288,600,000	13,0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16-102-0000900호	109,324,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제2조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사업승인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말함)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임대보증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임대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발코니새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임대계약자와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티에스자산개발(주)	200111-0332422
시공회사	(주)호반건설산업	200111-0308994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gumi-hoban.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529-1번지 ■ 분양문의 : ☎ 1600-173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600-1730 시행 **티에스자산개발** 시공 **호반건설산업**